

#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

제정 2008.12.31. 방송통신위원회훈령 제38호  
개정 2009.11.02. 방송통신위원회훈령 제61호  
전부개정 2012.09.21. 방송통신위원회훈령 제124호  
개정 2015.07.31. 방송통신위원회훈령 제201호  
개정 2017.03.10. 방송통신위원회훈령 제223호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송법」 제98조의2, 동법 시행령 제66조의2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행할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방송법」 제98조의2에 따른 사업자의 재산상황 공표, 「방송법」 제31조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방송평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기금징수를 위해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이하 “회계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 등에 적용한다.

제3조(기업회계기준 등의 준용) 이 지침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재

무제표는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계의 회계 관행에 따라 작성한다.

## 제2장 재무제표

제4조(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①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는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로 하고 부속명세서는 매출액명세서, 결합판매명세서, 매출원가명세서, 방송프로그램명세서, 협찬매출액명세서, 주주현황 및 변동내역, 영업통계 및 재산상황 경영자확인서 등의 명세서로 한다.

② 재무제표의 표준양식은 별지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서식을 따르고, 부속명세서의 표준양식은 별지 제3호부터 제10호까지의 서식을 따른다.

제5조(사업자의 매출액 구분) ① 사업자가 방송사업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이외의 사업(이하 “기타사업”이라 한다)을 겸영하는 경우 기타사업의 매출액을 방송사업매출액(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매출액을 포함, 이하 동일)과 구분하여 표시한다.

② 사업자는 방송사업매출액을 방송법 제2조제20의2호에 따른 채널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제6조(합병 등에 따른 회계처리) ① 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합병하는 경우 소멸되는 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재무제표는 합병기일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별지서식으로 작성하고 합병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한다.

② 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방송사업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분할 또는 양도하는 경우 분할(양도)법인은 분할(양도)기일의 재무제표를 별지서식으로 작성하여 분할(양도)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한다.

제7조(계정의 구분) 사업자는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 지침에서 정한 과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 지침에서 과목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재산상황 상의 적절한 계정으로 표시 후 관련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 제3장 재무상태표

제8조(선급금) 상품 및 원재료 등의 매입을 위하여 지급한 일반선급금과 제5장 방송프로그램 회계처리에 따른 결산일 현재 제작 또는 구입 중인 방송프로그램선급금으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제9조(재고자산)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을 제공하는데 투입될 원재료 및 소모품 등의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으로 방송 촬영에 필요한 필름, 테이프, 협찬물품 및 방송 장비 수선용 부품 등과 유료방송사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셋톱박스 등의 자산이 포함된다. 다만, 방송프로그램은 제외한다.

제10조(유형자산의 분류) ① 유형자산의 과목은 방송통신설비와 일반지원 자산으로 구분한다.

② 방송통신설비는 방송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및 기타 방송통신에 필요한 설비자산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방송설비 : 방송프로그램 · 광고 등의 제작 · 송출 · 중계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계장치 및 부속설비,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실물세트 · 의상 · 미술품 · 각종 소도구 등을 말한다.
2. 단말장치 : 유료방송사업자가 가입자에게 대여하는 수신용 가입자설비인 컨버터와 셋톱박스 등을 말한다.
3. 전송설비 : 교환설비 혹은 단말장치 등으로부터 수신된 부호·문언·음향·영상을 변환 재생하거나 증폭하여 유선 또는 무선으로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송단국장치, 중계장치, 다중화장치 및 분배장치 등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4. 선로설비 : 방송프로그램 혹은 일정한 형태의 전기통신신호를 전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동선 또는 광섬유 등의 전송매체로 제작된

선로 및 케이블 등과 이를 수용 또는 접속하기 위하여 제작된 전주, 관로, 통신터널, 배관 맨홀, 핸드홀 및 배선반 등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5. 정보처리설비 : 제작 혹은 구입방송프로그램을 저장·처리하는 장치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6. 전원설비 : 방송통신용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수변전장치, 정류기, 축전기, 전원반, 예비용 발동전기 및 배선 등의 설비를 말한다.
7. 건설중인 자산 : 건설중인 방송통신설비의 건설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와(건설을 위하여 지출한 도급금액 등을 포함), 방송통신설비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계약금 및 중도금 등으로 한다.
8. 기타 방송통신유형자산 :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방송통신사업 관련 설비자산으로 한다.

③ 일반지원자산은 방송통신설비의 유형자산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토지 : 영업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대지·임야·전답·잡종지 등으로 한다.
2. 건물 : 영업을 위하여 토지에 건설한 건축물과 냉난방·조명·통풍 및 기타의 건물부속설비로 한다.
3. 구축물 : 건물 이외의 토목설비, 공작물 및 이들의 부속설비로서 교량·안벽·부교·궤도·저수지·갱도·굴뚝·정원설비 및 기타의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 등으로 한다.

4. 비품 : 영업활동 및 판매관리활동에 필요한 책상·의자·컴퓨터 등의 집기로 한다.
5. 차량운반구 : 자동차 및 기타의 육상운반구와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및 송출과 관련한 차량운반구 및 그 부속설비로 한다.
6. 건설중인 자산 :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와 (건설을 위하여 지출한 도급금액 등을 포함),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계약금 및 중도금 등으로 한다.
7. 기타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방송통신설비의 유형자산으로 한다.

제11조(무형자산의 분류) 무형자산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영업권 : 기업의 합병·영업양수 및 전세권 취득 등의 과정에서 유상으로 구입한 매입영업권으로 한다.
2. 방송프로그램 : 방송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각종 권리를 포함하며 취득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가. 제작방송프로그램(자체제작 및 외주제작)
  - 나. 구입방송프로그램
3. 개발비 : 신제품, 신기술 등의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비용을 포함)으로써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4. 기타무형자산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무형자산으로 한다.

로서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한다.

## 제4장 손익계산서

제12조(매출액의 분류) ① 매출액은 방송사업매출액과 기타사업매출액으로 구분하고, 방송사업매출액은 사업자의 특성에 따라 구분하며 관련 매출액명세서를 별지와 같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이하 'DMB'라 한다) 포함, 이하 동일)의 방송사업매출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텔레비전방송수신료매출액 :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방송서비스 제공에 따른 텔레비전 수신료로 한다.
2. 재송신매출액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이하 'IPTV사업자'라 한다)와 같은 유료방송사업자 등에게 실시간방송을 목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
3. 방송프로그램제공매출액 :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제12조제4항제1호의 방송프로그램제공매출액을 말한다.
4. 방송프로그램판매매출액 : 자사의 모든 방송프로그램 판매로 인한 매출로 제2호의 재송신매출액을 제외한다.
5. 광고매출액 :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을 방송함에 따른 매

출액으로 직접 또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를 통한 매출액을 모두 포함하며, 겸영사업자의 경우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징수되는 지상파 광고매출액, 지상파DMB광고매출액 및 방송채널사용사업 광고매출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6. 협찬매출액 : 방송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협찬고지 매출액으로 타인으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고 그 타인의 명칭 또는 상호 등을 고지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액으로 TV, DMB, 라디오별로 제작협찬(자체제작 및 외주제작으로 구분), 캠페인협찬, 공익행사 협찬 및 기타 등으로 구분한다.

7. 기타방송사업매출액 : 방송사업매출액 중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매출액으로 한다.

③ 유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IPTV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포함, 이하 동일)의 방송사업매출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유료방송수신료매출액 : 유료방송서비스 제공에 따른 매출액을 기본 채널수신료매출액, 유료채널수신료매출액, 유료 주문형비디오(이하 'VOD'라 한다)매출액, 중계유선방송수신료매출액 및 기타수신료매출액으로 구분한다.

가. 기본채널수신료매출액 : 채널 단위로 묶여 파는 기본 상품의 수신료매출액으로 한다.

나. 유료채널수신료매출액 : 기본 채널 단위 묶음에 포함되지 아니하



고 채널 추가에 따라 채널마다 추가 요금을 받고 제공하는 채널 수신료매출액으로 한다.

다. 유료VOD수신료매출액 : 유료VOD서비스 제공에 따른 매출액으로 한다.

라. 중계유선방송수신료매출액 : 방송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중계유선 방송사업자의 시청자에게 청구하는 수신료매출액으로 한다.

마. 기타수신료매출액 : 수신료 매출액 중 가목부터 라목까지 제외한 기타수신료매출액으로 한다.

2. 광고매출액 :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을 방송함에 따른 매출액으로 직접 또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를 통한 매출액으로 한다.

3. 협찬매출액 : 방송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협찬고지 매출액으로 타인으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고 그 타인의 명칭 또는 상호 등을 고지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액으로 TV, DMB, 라디오별로 제작협찬(자체제작 및 외주제작으로 구분), 캠페인협찬, 공익행사 협찬 및 기타 등으로 구분한다.

4. 홈쇼핑송출수수료매출액 : 유료방송사업자가 홈쇼핑송출서비스 제공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액을 말한다.

5. 가입및시설설치매출액 : 신규 가입자 유치에 따른 가입비 및 방송수신 설비 설치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액으로 한다.

6. 단말장치대여(판매)매출액 : 가입자에게 단말장치를 대여(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매출액으로 한다.
7. 위성사용료매출액 : 위성사용료 명목으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받는 대가를 말한다.
8. 홈쇼핑방송매출액 :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제12조제4항제7호의 홈쇼핑방송매출액을 말한다.
9. 기타방송사업 매출액 : 방송사업매출액 중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매출액으로 한다.

④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포함, 이하 동일)의 방송사업매출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방송프로그램제공매출액 :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IPTV사업자 등의 방송채널에 방송프로그램(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 포함, 이하 동일)을 제공함으로써 그 대가로 받은 수신료분배 매출액을 말한다.
2. 광고매출액 :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을 방송함에 따른 수익으로 직접 또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를 통한 매출액으로 한다.
3. 협찬매출액 : 방송법 제22조제2호에 따른 협찬고지 매출액으로 타인으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TV, DMB, 라디오별로 제작협찬(자체제작 및 외주제작으로 구분), 캠페인 협찬, 공익행

사 협찬 및 기타 등으로 구분한다.

4. 방송프로그램판매매출액 : 자사의 모든 방송프로그램 판매로 인한 매출액으로 한다.
5. 방송시설임대매출액 : 방송기계기구 및 방송차량운반구 등의 임대애 따른 매출액으로 한다.
6. 행사매출액 : 방송사업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과 관련된 행사개최에 따른 매출액으로, 방송사업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행사의 매출액은 기타사업매출액으로 한다.
7. 홈쇼핑방송매출액 :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홈쇼핑사업자”)의 방송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출액으로 수수료매출액과 상품 등 매출액으로 구분한다.
  - 가. 수수료매출액 : 홈쇼핑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상품 등을 방송하여 주고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 나. 상품 등 매출액 : 홈쇼핑사업자가 방송을 통하여 직접 판매하는 상품 등의 판매액으로 한다.
  - 다. 기타 :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매출액으로 금액이 중요한 경우 주석기재 한다.
8. 기타방송사업 매출액 :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포함되지 않은 방송사업매출액으로 한다.

⑤ 기타사업매출액은 방송사업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이외

의 사업을 통해 창출된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유료방송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의 기타사업매출액은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 기준에 따라 작성된 영업보고서상의 전기통신사업매출액과 기타매출액으로 다음의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전기통신사업 매출액 : 초고속인터넷 및 인터넷전화 등 전기통신사업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발생한 매출액으로 한다.
2. 기타매출액 : 제1호 전기통신사업 매출액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타사업 매출액으로 한다.

제13조(영업비용의 분류) ① 영업비용은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매출원가 및 판매관리비로 구분하고 매출원가명세서를 별지와 같이 작성하여 제출한다.

②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매출원가는 방송프로그램비용과 기타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 1. 방송프로그램비용

가. 방송프로그램제작비 : 결산일 현재 제작이 완료되어 방영된 제작 방송프로그램으로써 재방영이 불확실한 방송프로그램의제작비용 및 재방영이 확실한 방송프로그램의 당기 무형자산 상각액을 말한다.

나. 방송프로그램구입비 : 결산일 현재 구입이 완료되어 방영된 구입 방송프로그램으로써 재방영이 불확실한 방송프로그램의 구입비용

및 재방영이 확실한 방송프로그램의 당기 무형자산 상각액을 말한다.

2. 기타 : 방송프로그램비용외 매출원가로 한다.

③ 지상파방송사업자의 판매관리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인건비 : 종업원과 임원의 급여 · 상여금 · 제수당 및 퇴직급여 등으로써 판매관리비 성격의 비용만을 말한다.

2. 유형자산감가상각비 :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용 · 진부화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그 물리적 · 경제적 가치가 감소함에 따라 정확한 기간손익을 산출하기 위해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중 당기에 가치가 감소되어 비용화 된 부분으로 한다.

3. 무형자산상각비 :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용 · 진부화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그 물리적 · 경제적 가치가 감소함에 따라 정확한 기간손익을 산출하기 위해 무형자산의 취득원가 중 당기에 가치가 감소되어 비용화 된 부분으로 한다.

4. 복리후생비 : 임직원의 복리 및 후생을 위해 사용된 비용으로 한다.

5. 세금과공과 : 법인세를 제외한 영업과 관련된 세금 및 각종 공과금을 말한다.

가. 방송통신발전기금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 방송통신발전기금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납부하는 기금으로 한다.

나. 기타세금과공과 :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제외한 기타의 세금과공과

로 한다.

6. 광고대행수수료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에게 광고판매 위탁을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로 한다.
7. 지급수수료 : 사업자의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로 한다
8. 지급임차료 : 토지, 건물, 기계장치 및 차량운반구 등을 빌려 쓰고 지급한 사용료로 한다.
9. 교육훈련비 : 임직원의 교육훈련에 소요된 직접비로 한다.
10. 기타 :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의 판매관리비로 한다.

④ 유료방송사업자의 매출원가는 방송프로그램비용과 기타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방송프로그램비용 : 지역 채널 운영 등을 위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구입 등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방송프로그램제작비 : 제2항제1호가목과 같다.

나. 방송프로그램구입비 : 제2항제1호나목과 같다.

다. 방송프로그램사용료 : 방송프로그램 제공 대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 (1) 기본채널프로그램사용료 : 제12조제3항제1호가목의 채널에 프로그램을 제공한 대가(무료 VOD 프로그램 제공 대가를 포함)로 지급한 사용료를 말한다.

(2) 유료채널프로그램사용료 : 제12조제3항제1호나목의 채널에 프로그램을 제공한 대가로 지급한 사용료를 말한다.

(3) 유료VOD 프로그램사용료 : 제12조제3항제1호다목의 채널에 프로그램을 제공한 대가로 지급한 사용료를 말한다.

(4) 재송신비용 : 제12조제2항제2호에 대응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사용한 대가로 지급한 비용을 말한다.

2. 기타 매출원가 : 방송프로그램비용외 매출원가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전송망사용료 : 방송프로그램 전송을 위하여 전송망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사용료로 한다.

나. 위성사용료 : 방송프로그램 전송을 위하여 위성방송사업자가 위성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사용료로 한다.

다. 기타 : 가목과 나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매출원가로 한다.

⑤ 유료방송사업자의 판매관리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인건비 : 제3항제1호를 준용한다.

2. 유형자산감가상각비 : 제3항제2호를 준용한다.

3. 무형자산상각비 : 제3항제3호를 준용한다.

4. 복리후생비 : 제3항제4호를 준용한다.

5. 세금과공과 : 제3항제5호를 준용한다.

가. 방송통신발전기금 : 제3항제5호가목을 준용한다.

나. 기타세금과공과 : 제3항제5호나목을 준용한다.

6. 광고대행수수료 : 제3항제6호를 준용한다.

7. 광고선전비 : 영업활동 수행상 지출된 광고선전비로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8. 판매촉진비 : 고객유치수수료, 고객유치수당, 홍보용품구입비 및 전단지제작비 등 영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9. 지급수수료 : 제3항제7호를 준용한다.

10. 지급임차료 : 제3항제8호를 준용한다.

11. 교육훈련비 : 제3항제9호를 준용한다.

12. 기타 :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의 판매관리비로 한다.

⑥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매출원가는 방송프로그램비용과 기타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방송프로그램비용

가. 방송프로그램제작비 : 제2항제1호가목과 같다.

나. 방송프로그램구입비 : 제2항제1호나목과 같다.

2. 기타 : 방송프로그램비용외 매출원가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홈쇼핑송출수수료 : 홈쇼핑방송사업자가 홈쇼핑방송을 송출하고 지출하는 수수료 비용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IPTV사업자 및 기타로 구분하여 인식한다.



나. 전송망사용료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에게 방송프로그램을 전송하기 위하여 전송망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사용료로 한다.

다. 위성사용료 : 위성방송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전송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라. 상품 등 매출원가 : 홈쇼핑사업자가 직접 판매하는 상품 등의 매출원가를 말한다.

마. 기타 : 제1호 및 가목부터 라목까지 포함되지 않는 매출원가로 한다.

⑦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판매관리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인건비 : 제5항제1호를 준용한다.
2. 유형자산감가상각비 : 제5항제2호를 준용한다.
3. 무형자산상각비 : 제5항제3호를 준용한다.
4. 복리후생비 : 제5항제4호를 준용한다.
5. 세금과공과 : 제5항제5호를 준용한다.

가. 방송통신발전기금 : 제5항제5호가목을 준용한다.

나. 기타세금과공과 : 제5항제5호나목을 준용한다.

6. 광고대행수수료 : 제5항제6호를 준용한다.
7. 광고선전비 : 제5항제7호를 준용한다.
8. 지급수수료 : 제5항제9호를 준용한다.
9. 지급임차료 : 제5항제10호를 준용한다.

10. 교육훈련비 : 제5항제11호를 준용한다.

11. 기타 :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의 판매관리비로 한다.

제14조(영업외손익의 구분) 사업자가 적용하는 기업회계기준과 무관하게 영업외수익 및 영업외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영업외수익 : 보조금(현금 등 포함) 수익, 임대수익, 외환차익, 외화환산이익, 각종 자산 처분이익 · 평가이익, 각종 자산의 손상차손환입, 대손충당금 환입, 각종 금융수익(이자수익, 배당수익 등), 기타충당부채환입액 및 잡이익 등으로 영업활동외 수익으로 한다.
2. 영업외비용 : 외환차손, 외화환산손실, 각종 자산처분손실 · 평가손실, 각종 자산의 손상차손, 기타의 대손상각비, 각종 금융비용(이자비용 등), 기부금, 기타충당부채전입액 및 잡손실 등 영업활동외 비용으로 한다.

제15조(결합판매매출액 분류) ① 방송사업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과 기타사업을 결합판매하는 경우의 수익은 이용약관에 명시된 할인가격 또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배부한다. 다만, 약관에 결합판매 가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결합판매 가격을 확실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및 실제 판매시 약관에 명시된 가격 및 할인율과 다르게 판매하는 경우 등에는 개별상품의 이용약관상요금 비율로 배분한다.

② 결합판매매출액은 별지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16조(권역별 회계) 2개 이상의 방송사업권역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각각의 방송사업권역별로 본·지점회계처리기준을 준용하여 구분 경리하여 제출 한다. 다만, 구분 경리가 곤란한 재무상태표, 방송프로그램명세서, 주주현황 및 변동내역, 경영자확인서는 본점이 작성하며, 손익계산서, 매출액명세서, 결합판매명세서, 매출원가명세서, 협찬매출액명세서 및 영업통계는 권역별로 제출한다.

## 제5장 방송프로그램 회계처리

제17조(제작 방송프로그램) 사업자가 제작(자체제작 및 외주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한다.

1. 결산일 현재 제작이 완료되지 않은 방송프로그램은 제작 완료 시점까지 선급금(방송프로그램선급금)으로 처리한다.
2. 결산일 현재 제작 완료되어 방영되었으나 재방영이 불확실한 방송프로그램은 방영시점에 매출원가로 처리한다.
3. 결산일 현재 제작 완료되었으나 방영되지 아니한 방송프로그램은 무형자산으로 처리한 후 방영시점에 재방영 여부를 고려하여 매출원가 처리한다. 다만, 무형자산 계상 후 방영 가능성이 희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관련 무형자산의 장부가액을 손상차손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

손실(영업외비용)로 처리한다.

4. 결산일 현재 제작 완료되어 방영된 방송프로그램 중 재방영이 확실한 방송프로그램은 무형자산으로 처리하고 재방영 경험률 등을 고려한 합리적 내용연수 동안 상각하여 매출원가로 처리한다. 다만, 무형자산 계상 후 재방영 가능성이 희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관련 무형자산의 장부가액을 손상차손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실(영업외비용)로 처리한다.

제18조(구입 방송프로그램) 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을 구입(임차 포함, 이하 동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다.

1. 결산일 현재 구입이 완료되지 않은 방송프로그램은 구입 완료 시점까지 선급금(방송프로그램선급금)으로 처리한다. 구입 완료 시점이란 구입 대가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구입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시점을 말한다.
2. 결산일 현재 구입이 완료되어 방영되었으나 재방영이 불확실한 방송프로그램은 방영시점에 매출원가로 처리한다.
3. 결산일 현재 구입 완료되었으나 방영되지 아니한 방송프로그램은 무형자산으로 처리한 후 방영시점에 재방영 여부를 고려하여 매출원가 처리한다. 다만, 무형자산 계상 후 방영 가능성이 희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관련 무형자산의 장부가액을 손상차손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실(영업외비용)로 처리한다.

4. 결산일 현재 구입 완료되어 방영된 방송프로그램 중 재방영이 확실한 방송프로그램은 무형자산으로 처리하고 계약조건, 재방영 경험률 등을 고려한 합리적 내용연수 동안 상각하여 매출원가로 처리한다. 다만, 무형자산 계상 후 재방영 가능성이 희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관련 무형자산의 장부가액을 손상차손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실(영업외비용)로 처리한다.

## 제6장 보칙

제19조(회계자료의 제출시기 등) ① 사업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회계자료의 양식은 별지와 같다.

② 사업자는 「방송법 시행령」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제1항에 따른 회계자료 및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작성 대상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세무조정계산서 등으로 제2항의 감사보고서를 갈음할 수 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 등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사업자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및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회계자료의 관리 기록) ① 사업자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회계자료

분류항목에 대한 분류부호 체계를 마련하고 회계자료를 지속적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와 관련한 회계자료에 대해서는 제출시점으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자료의 검증)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제출한 회계자료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다.

제22조(재산상황의 공표 및 공개)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가 제출한 회계자료에 대해 사업자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재산상황을 매년 6월 30일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제23조(규제의 재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5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1호, 2009.11.2.>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24호, 2012.9.2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지침의 규정은 2012회계연도 재산상황 작성 시  
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1호, 2015.7.31.>

이 규정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23호, 2017.3.1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목차]

서 식	구 분
제1호 서식	재무상태표
제2호 서식 손익계산서	제2-1호 서식 지상파방송사업자 손익계산서
	제2-2호 서식 유료방송사업자 손익계산서
	제2-3호 서식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손익계산서
제3호 서식 매출액명세서	제3-1호 서식 지상파방송사업자 매출액명세서
	제3-2호 서식 유료방송사업자 매출액명세서
	제3-3호 서식 방송채널사용사업 매출액명세서
제4호 서식	결합판매명세서
제5호 서식 매출원가명세서	제5-1호 서식 지상파방송사업자 매출원가명세서
	제5-2호 서식 유료방송사업자 매출원가명세서
	제5-3호 서식 방송채널사용사업 매출원가명세서
제6호 서식	방송프로그램명세서
제7호 서식	협찬매출액명세서
제8호 서식	주주현황 및 변동내역
제9호 서식 영업통계	제9-1호 서식 지상파방송사업자 영업통계
	제9-2호 서식 유료방송사업자 영업통계
	제9-3호 서식 방송채널사용사업 영업통계
제10호 서식	재산상황 경영자확인서



(별지 제1호 서식)

재무상태표

제X(당)기 20XX년 XX월 XX일 현재

제X(전)기 20XX년 XX월 XX일 현재

기업명:

(단위: 원)

과 목	회계연도		비율분석	
	20X1년	20X2년	20X1년	20X2년
<b>자산</b>				
<b>I. 유동자산</b>				
(1) 당좌자산				
1. 현금및현금성자산				
2. 단기투자자산				
3. 단기대여금				
4.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5. 미수금 (대손충당금)				
6. 미수수익				
7. 선급금 (대손충당금)				
가. 일반 선급금				
나. 방송프로그램 선급금				
8. 선급비용				
9. 이연법인세자산				
10. 당기법인세자산				
11. 기타당좌자산				
(2) 재고자산				
<b>II. 비유동자산</b>				
(1) 투자자산				
1. 지분법적용투자주식				
2. 장기투자증권				
3. 장기대여금 (대손충당금)				
4. 기타투자자산				
(2) 유형자산				
A. 방송통신설비				
1. 방송설비 (감가상각누계액)				
2. 단말장치 (감가상각누계액)				
3. 전송설비				

		(감가상각누계액)				
	4.	선로설비				
		(감가상각누계액)				
	5.	정보처리설비				
		(감가상각누계액)				
	6.	전원설비				
		(감가상각누계액)				
	7.	건설중인 자산				
	8.	기타 방송통신유형자산				
		(감가상각누계액)				
	B.	일반지원자산				
	1.	토지				
	2.	건물				
		(감가상각누계액)				
	3.	구축물				
		(감가상각누계액)				
	4.	비품				
		(감가상각누계액)				
	5.	차량운반구				
		(감가상각누계액)				
	6.	건설중인 자산				
	7.	기타				
		(감가상각누계액)				
	(3)	무형자산				
	1.	영업권				
	2.	방송프로그램				
	가.	제작 방송프로그램				
	나.	구입 방송프로그램				
	3.	개발비				
	4.	기타 무형자산				
	(4)	기타 비유동자산				
<b>자 산 총 계</b>						
<b>부채</b>						
<b>I. 유동부채</b>						
	1.	매입채무				
	2.	단기차입금				
	3.	미지급금				
	4.	미지급비용				
	5.	이연법인세부채				
	6.	당기법인세부채				
	7.	기타유동부채				
<b>II. 비유동부채</b>						
	1.	장기차입금				
	2.	퇴직급여충당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차감)				

	3.	기타 총당부채				
	4.	이연법인세부채				
	5.	기타고정부채				
부채 총 계						
자본						
I.	자본금					
II.	자본잉여금					
III.	자본조정					
VI.	기타포괄손익누계액					
V.	이익잉여금					
자본총계						
부채와자본총계						

(별지 제2-1호 서식)

### 지상파방송사업자 손익계산서

제X(당)기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  
제X(전)기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

기업명:

(단위: 원)

과 목		회계연도		비율분석	
		20X1년	20X2년	20X1년	20X2년
<b>I.</b>	<b>매출액</b>				
(1)	방송사업매출액				
	1. 텔레비전 방송수신료매출액				
	2. 재송신매출액				
	3. 방송프로그램제공매출액				
	4. 광고매출액				
	가. 지상파광고매출액				
	나. 지상파DMB 광고매출액				
	다. 방송채널사용사업 광고매출액				
	5. 협찬매출액				
	6. 방송프로그램판매매출액				
	7. 기타방송사업매출액				
(2)	기타사업매출액				
<b>II.</b>	<b>매출원가</b>				
	1. 방송프로그램비용				
	가. 방송프로그램제작비				
	나. 방송프로그램구입비				
	2. 기타				
<b>III.</b>	<b>매출총이익</b>				
<b>IV.</b>	<b>판매관리비</b>				
	1. 인건비				
	2. 유형자산감가상각비				
	3. 무형자산상각비				

	4.	복리후생비				
	5.	세금과공과				
	가.	방송통신발전기금				
	나.	기타세금과공과				
	6.	광고대행수수료				
	7.	지급수수료				
	8.	지급임차료				
	9.	교육훈련비				
	10.	기타				
<b>V.</b>	<b>영업손익</b>					
<b>VI.</b>	<b>영업외수익</b>					
	1.	이자수익				
	2.	지분법이익				
	3.	기타 영업외수익				
<b>VII.</b>	<b>영업외비용</b>					
	1.	이자비용				
	2.	기부금				
	3.	지분법손실				
	4.	기타 영업외비용				
<b>VIII.</b>	<b>법인세차감전 계속사업손익</b>					
<b>IX.</b>	<b>계속사업법인세비용</b>					
<b>X.</b>	<b>계속사업손익</b>					
<b>XI.</b>	<b>중단사업손익</b>					
	(법인세효과 : XXX원)					
<b>XII.</b>	<b>당기순손익</b>					

(별지 제2-2호 서식)

### 유료방송사업자 손익계산서

제X(당)기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  
제X(전)기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

기업명:

(단위:원)

과 목		회계연도		비율분석	
		20X1년	20X2년	20X1년	20X2년
<b>I.</b>	<b>매출액</b>				
(1)	방송사업매출액				
	1. 유료방송수신료매출액				
	가. 기본채널수신료매출액				
	나. 유료채널수신료매출액				
	다. 유료VOD수신료매출액				
	라. 중계유선방송수신료매출액				
	마. 기타수신료매출액				
	2. 광고매출액				
	3. 협찬매출액				
	4. 홈쇼핑송출수수료매출액				
	5. 가입및시설설치매출액				
	6. 단말장치대여(판매)매출액				
	7. 위성사용료매출액				
	8. 홈쇼핑방송매출액				
	9. 기타방송사업매출액				
(2)	기타사업매출액				
	1. 전기통신사업매출액				
	2. 기타매출액				
<b>II.</b>	<b>매출원가</b>				
	1. 방송프로그램비용				
	가.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나. 방송프로그램 구입비				
	다. 방송프로그램 사용료				
	i) 기본채널프로그램사용료				
	ii) 유료채널프로그램사용료				
	iii) 유료VOD프로그램사용료				
	iv) 재송신비용				

	2.	기타 매출원가				
	가.	전송망사용료				
	나.	위성사용료				
	다.	기타				
<b>III.</b>	<b>매출총이익</b>					
<b>IV.</b>	<b>판매관리비</b>					
	1.	인건비				
	2.	유형자산감가상각비				
	3.	무형자산상각비				
	4.	복리후생비				
	5.	세금과공과				
		가.방송통신발전기금				
		나.기타세금과공과				
	6.	광고대행수수료				
	7.	광고선전비				
	8.	판매촉진비				
	9.	지급수수료				
	10.	지급임차료				
	11.	교육훈련비				
	12.	기타				
<b>V.</b>	<b>영업손익</b>					
<b>VI.</b>	<b>영업외수익</b>					
	1.	이자수익				
	2.	지분법이익				
	3.	기타영업외수익				
<b>VII.</b>	<b>영업외비용</b>					
	1.	이자비용				
	2.	기부금				
	3.	지분법손실				
	4.	기타영업외비용				
<b>VIII.</b>	<b>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익</b>					
<b>IX.</b>	<b>계속사업법인세비용</b>					
<b>X.</b>	<b>계속사업손익</b>					
<b>XI.</b>	<b>중단사업손익</b>					
	(법인세효과 : XXX원)					
<b>XII.</b>	<b>당기순손익</b>					

(별지 제2-3호 서식)

###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손익계산서

제X(당기)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  
제X(전기)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

기업명:

(단위: 원)

과목	회계연도		비율분석	
	20X1년	20X2년	20X1년	20X2년
<b>I. 매출액</b>				
(1) 방송사업매출액				
1. 방송프로그램제공매출액				
2. 광고매출액				
3. 협찬매출액				
4. 방송프로그램 판매매출액				
5. 방송시설임대매출액				
6. 행사매출액				
7. 홈쇼핑방송매출액				
가. 수수료매출액				
나. 상품 등 매출액				
다. 기타				
8. 기타방송사업매출액				
(2) 기타사업매출액				
<b>II. 매출원가</b>				
1. 방송프로그램비용				
가. 방송프로그램제작비				
나. 방송프로그램구입비				
2. 기타				
가. 홈쇼핑송출수수료				
나. 전송 망사용료				



	다.	위성사용료				
	라.	상품 등 매출원가				
	마.	기타				
<b>III.</b>	<b>매출총이익</b>					
<b>IV.</b>	<b>판매관리비</b>					
	1.	인건비				
	2.	유형자산감가상각비				
	3.	무형자산상각비				
	4.	복리후생비				
	5.	세금과공과				
	가.	방송통신발전기금				
	나.	기타세금과공과				
	6.	광고대행수수료				
	7.	광고선전비				
	8.	지급수수료				
	9.	지급임차료				
	10.	교육훈련비				
	11.	기타				
<b>V.</b>	<b>영업손익</b>					
<b>VI.</b>	<b>영업외수익</b>					
	1.	이자수익				
	2.	지분법이익				
	3.	기타영업외수익				
<b>VII.</b>	<b>영업외비용</b>					
	1.	이자비용				
	2.	기부금				
	3.	지분법손실				
	4.	기타영업외비용				
<b>VIII.</b>	<b>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 손익</b>					

IX.	계속사업법인세비용				
X.	계속사업손익				
XI.	중단사업손익				
	(법인세효과 : XXX원)				
XII.	당기순손익				

(별지 제3-1호 서식)

### 지상파방송사업자 매출액명세서

제X(당)기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

기업명:

(단위: 원)

과 목		매체구분					특수 관계자 매출액
		TV	RADIO	지상파 DMB	기타	합계	
I.	방송사업매출액						
	1.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매출액						
	2. 재송신매출액						
	3. 방송프로그램제공매출액						
	4. 광고매출액						
	가) 지상파광고매출액						
	나) 지상파DMB 광고매출액						
	다) 방송채널사용사업 광고매출액						
	5. 협찬매출액						
	6. 방송프로그램판매매출액						
	7. 기타방송사업매출액						
	가) 방송시설임대매출액						
	나) 행사매출액						
	다) 방송발전기금지원액 (프로그램제작지원)						
	라) 기타국고보조금 등 수익						
	마) 기타						
II.	기타사업매출액						

	1.	부동산임대사업매출액						
	2.	출판사업매출액						
	3.	문화사업매출액						
	4.	기타사업매출액						
합 계								

(주1) 방송사업수익은 매체별(TV/RADIO/지상파DMB)로 작성되어야 하며, 구분이 모호한 것은 기타로 분류한다.

(주2) 사업자의 주된 사업으로써의 임대매출액은 기타사업매출액 대상이며, 부수적인 수준의 임대매출액은 영업외수익 처리한다.

(주3) 특수관계자 여부는 방송법 시행령 제3조(특수관계자의 범위)에 따른다.

(별지 제3-2호 서식)

### 유료방송사업자 매출액명세서

제X(당)기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

기업명:

(단위:원)

과 목		아날로그	디지털	기타	합계	특수관계자 매출액
I.	방송사업매출액					
	1. 유료방송수신료매출액					
	가) 기본채널수신료매출액					
	나) 유료채널수신료매출액					
	다) 유료VOD수신료 매출액					
	라) 중계유선방송수신료 매출액					
	마) 기타수신료매출액					
	2. 광고매출액					
	3. 협찬매출액					
	4. 홈쇼핑송출수수료매출액					
	5. 가입및시설설치매출액					
	6. 단말장치대여(판매)매출액					
	7. 위성사용료매출액					
	8. 홈쇼핑방송매출액					
	가) 수수료매출액					
	나) 상품 등 매출액					
	다) 기타					
	9. 기타방송사업매출액					
	가) 방송발전기금지원액 (프로그램제작지원)					
	나) 기타국고보조금등수익					
	다) 기타					
II.	기타사업매출액					

1.	전기통신사업매출액					
2.	부동산임대사업매출액					
3.	기타사업매출액					
<b>합 계</b>						

(주1) 방송매출액은 아날로그, 디지털 및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함

(주2) 특수관계자는 방송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자로 특수관계자별로 주기표시한다.

(주3) 기본채널수신료매출액이란채널단위로묶어파는기본상품의수신료매출액으로한다.

(주4) 유료채널수신료매출액이란기본채널단위묶음에포함되지아니하고채널추가에따라채널마다추가요금을받고제공하는채널수신료매출액으로한다.

(주5) 유료VOD수신료매출액이란VOD(PPV등포함)서비스제공에따른매출액으로한다.

(주6) 단말장치 대여(판매)수익은 정상적인 단말장치 판매수익을 포함한다.

(주7) 위성사용료매출액이란위성사업자가위성사용료명목으로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받는대가를말한다.

(주8) 기타방송사업매출액 중 기타는 프로그램제작지원 외 목적으로 지원받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등을 포함한다.

(별지 제3-3호 서식)

###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매출액명세서

제X(당)기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

기업명:

(단위:원)

과 목	매체구분						특수관계자 매출액
	SO	위성 방송	지상파 DMB	IPTV	기타	합계	
<b>I. 방송사업매출액</b>							
1. 방송프로그램제공매출액							
2. 광고매출액							
3. 협찬매출액							
4. 방송프로그램판매매출액							
5. 방송시설임대매출액							
6. 행사매출액							
7. 홈쇼핑방송매출액							
가. 수수료매출액							
나. 상품 등 매출액							
다. 기타							
8. 기타방송사업매출액							
가. 방송발전기금지원액 (프로그램제작지원)							
나. 기타국고보조금등수익							
다. 기타							
<b>II. 기타사업매출액</b>							
1. 부동산임대사업매출액							
2. 기타사업매출액							
합 계							

(주1) 방송매출액은 채널을 공급하는 플랫폼(SO, 위성방송, IPTV 등)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주2) 홈쇼핑사업자의 방송매출액은 수수료형태매출액과 직매입 등을 통한 상품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주3) 특수관계자 여부는 방송법 시행령 제3조(특수관계자의 범위)에 따른다.

(별지 제4호 서식)

## 결합판매명세서

제X(당)기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

기업명:

(단위:원)

구분		결합판매상품 1	결합판매상품 2	결합판매상품 3	...	합 계
방송사업매출액						
통신사업 매출액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기타					
합계						
특수관계자매출액						



(별지 제5-1호 서식)

### 지상파방송사업자 매출원가명세서

제X(당)기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

기업명:

(단위: 원)

구분		금액		
방송프로그램비용				
① 방송프로그램제작비		직접원가	간접원가	합계
1. 인건비	급여(각종 제수당 포함)			
	잡급			
	퇴직급여			
	소계			
2. 인건비 제외 직·간접제작비	원고출연료			
	음향영상재료비			
	미술재료비			
	기획비			
	제작진행비			
	외부장비이용료			
	외부시설이용료			
	복리후생비			
	감가상각비			
	무형자산(방송프로그램 외 무형자산)			
	상각비			
	여비			
	도서인쇄비			
	소모품비			
	피복비			
	수선유지비			
	차량유지비			
	수도광열비			
	통신비			
	세금과공과			
	법정부담금			
보험료				
지급수수료				
임차료				

	조사연구비			
	회의비			
	기타			
	<b>소계</b>			
<b>3. 외주제작비</b>	외주제작비			
<b>당기 제작원가(1+2+3)</b>				
<b>② 방송프로그램 구입비</b>	무형자산(구입방송프로그램)			
	상각비			
	기타 방송프로그램구입비			
	<b>소계</b>			
<b>I. 방송프로그램비용(①+②)</b>				
<b>II. 기타</b>				
<b>III. 매출원가(I+II)</b>				

※ 전기이전에 선급금 또는 무형자산(제작방송프로그램) 처리되었던 제작프로그램이 당기 방영된 경우 원가(비용 성격에 따른 원가계정에 각각 기입)처리하며 무형자산 처리후 재방영 가능성이 확보한 경우에는 영업외비용(손상차손) 처리한다.

※ III. 매출원가는 I.방송프로그램비용(방송프로그램 제작비과 방송프로그램 구입비)과 II.기타매출원가로 구성된다.

※ 제작방송프로그램 중 재방영이 확실하여 한리적 기간동안 상각하여 매출원가를 인식하는 경우에도 무형자산상각비 계정이 아닌 당기 상각액을 발생 원천에 따라 인건비/인건비 제외 직,간접 제작비/외주제작비로 구분하여 인식하여야 한다.

(별지 제5-2호 서식)

### 유료방송사업자 매출원가명세서

제X(당)기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

기업명:

(단위: 원)

구분		금액		
방송프로그램비용				
① 방송프로그램제작비		직접원가	간접원가	합계
1. 인건비	급여(각종 제수당 포함)			
	잡급			
	퇴직급여			
	소계			
2. 인건비 제외 직·간접제작비	원고출연료			
	음향영상재료비			
	미술재료비			
	기획비			
	제작진행비			
	외부장비이용료			
	외부시설이용료			
	복리후생비			
	감가상각비			
	무형자산(방송프로그램 외 무형자산)상각비			
	여비			
	도서인쇄비			
	소모품비			
	피복비			
	수선유지비			
	차량유지비			
	수도광열비			
	통신비			
	세금과공과			
	법정부담금			
	보험료			
	지급수수료			
	임차료			

	조사연구비			
	회의비			
	기타			
	소계			
<b>3. 외주제작비</b>	<b>외주제작비</b>			
<b>당기 제작원가(1+2+3)</b>				
<b>② 방송프로그램 구입비</b>	무형자산(구입방송프로그램)			
	상각비			
	기타 방송프로그램구입비			
	소계			
<b>③ 방송프로그램 사용료</b>	기본채널 프로그램 사용료			
	유료채널 프로그램 사용료			
	유료VOD 프로그램 사용료			
	재송신비용			
<b>I. 방송프로그램비용 합계(①+②)</b>				
<b>II. 기타 매출원가</b>				
	① 전 송망 사용료			
	② 위성 사용료			
	③ 기타			
<b>III. 매출원가(I+II)</b>				

※ 전기이전에 선금금 또는 무형자산 제작프로그램) 처리되었던 제작프로그램이 당기 방영된 경우 원가(비용 성격에 따른 원가계정에 각각 기입)처리하며 무형자산 처리후 재방영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는 영업외비용(손상차손) 처리한다.

※ III. 매출원가는 I. 프로그램비용(프로그램 제작비과 프로그램 구입비)과 II. 기타매출원가로 구성된다.

※ 제작방송프로그램 중 재방영이 확실하여 한리적 기간동안 상각하여 매출원가를 인식하는 경우에도 무형자산상각비 계정이 아닌 당기 상각액을 발생 원천에 따라 인건비/인건비 제외 직,간접 제작비/외주제작비로 구분하여 인식하여야 한다.

(별지 제5-3호 서식)

###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매출원가명세서

제X(당기)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

기업명:

(단위: 원)

구분		금액		
방송프로그램비용				
① 방송프로그램제작비		직접원가	간접원가	합계
1. 인건비	급여(각종 제수당 포함)			
	잡급			
	퇴직급여			
	소계			
2. 인건비 제외 직·간접 제작비	원고출연료			
	음향영상재료비			
	미술재료비			
	기획비			
	제작진행비			
	외부장비이용료			
	외부시설이용료			
	복리후생비			
	감가상각비			
	무형자산(방송프로그램 외 무형자산) 상각비			
	여비			
	도서인쇄비			
	소모품비			
	피복비			
	수선유지비			
	차량유지비			
	수도광열비			
	통신비			
	세금과공과			
	법정부담금			
보험료				
지급수수료				
임차료				

	조사연구비			
	회의비			
	기타			
	<b>소계</b>			
<b>3. 외주제작비</b>	외주제작비			
<b>당기 제작원가(1+2+3)</b>				
<b>② 방송프로그램 구입비</b>	무형자산(구입방송프로그램)			
	상각비			
	기타 방송프로그램구입비			
	<b>소계</b>			
<b>I. 방송프로그램비용(①+②)</b>				
<b>II. 기타</b>				
① 홈쇼핑송출수수료				
② 전송망사용료				
③ 위성사용료				
④ 상품 등 매출원가				
⑤ 기타				
<b>III. 매출원가(I+II)</b>				

※ 전기이전에 선급금 또는 무형자산(제작방송프로그램) 처리되었던 제작방송프로그램이 당기 방영된 경우 원가(비용 성격에 따른 원가 계정에 각각 기입)처리하며 무형자산 처리후 재방영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는 영업외비용(손상차손) 처리한다.

※ III. 매출원가는 I. 방송프로그램비용(방송프로그램 제작비과 방송프로그램 구입비)과 II. 기타매출원가로 구성된다.

※ 제작방송프로그램 중 재방영이 확실하여 한리적 기간동안 상각하여 매출원가를 인식하는 경우에도 무형자산상각비 계정이 아닌 당기 상각액을 발생 원천에 따라 인건비/인건비 제외 직,간접 제작비/외주제작비로 구분하여 인식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 서식)

## 방송프로그램명세서

제X(당)기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

기업명:

(단위: 원)

구분	제작 프로그램		구입 프로그램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기초금액	방송프로그램 선금금		방송프로그램 선금금	
	무형자산 (제작방송프로그램)		무형자산 (구입방송프로그램)	
	소계		소계	
당기증가	방송프로그램 선금금 증가		방송프로그램 선금금 증가	
	무형자산 증가(주1)		무형자산 증가(주1)	
	소계		소계	
당기감소	매출 원가	방송프로그램제작비	방송 프로그램구입비	
	영업외 비용	무형자산손상차손	무형자산손상차손	
		소계	소계	
기말금액	방송프로그램 선금금		방송프로그램 선금금	
	무형자산 (제작방송프로그램)		무형자산 (구입방송프로그램)	
	소계		소계	

(주1) 무형자산 당기 증가분 중 방송프로그램선금금이 당기 제작 및 구입 완료되어 무형자산으로 대체됨으로써 증가한 무형자산 증가금액은 제외한다..

(별지 제7호 서식)

## 협찬매출액명세서

제X(당)기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

기업명:

소재지(주1):

(단위: 원)

구분	공익성캠페인	제작협찬		공익행사 (문화예술, 스포츠등)	기타(시상품 등)	합계
		자체제작	외주제작			
TV						
RADIO						
DMB						
합계						

(주1) 방송사업자 소재지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8호 서식)

## 주주현황 및 변동내역

제X(당)기 20xx년 xx월 xx일 현재

기업명:

(단위: 원)

주주명	출자비중				방송사업자 여부	특수관계 여부(주2)	외국인 여부(주3)
	주식수(개)	투자금액	지분율(%)	변동율(%) (주1)			
합계(주4)							

(주1) 전기 지분율 52%였던 주주가 당기 50%로 지분율 변동하였다면 변동율은 "-2"로 기재한다.

(주2) 특수관계자 여부는 방송법 시행령 제3조(특수관계자의 범위)에 따른다.

(주3) 주주가 법인인 경우 외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비율이 50%이상인 경우 외국인으로 분류한다.

(주4) 지분율이 5%이상인 주주만 표시하되, 특수관계 주주는 5%미만이라도 모두 기재하고, 기타주주는 기타소액주주로 기재하여 지분율 합계가 100%가 되도록 한다.

(별지 제9-1호 서식)

### 지상파방송사업자 영업통계

제X(당)기 20xx년 xx월 xx일 현재

기업명:

(단위:명/개/원)

구분	과 목		TV	RADIO	합계
KBS	1.	가입자수(주1)			
	가)	기초 가입자			
	나)	순증가입자			
	①	신규가입자			
	②	해지가입자			
	다)	기말 가입자			
	2.	당기수신료징수비용(주1)			
	가)	인건비			
	나)	위탁징수비			
	다)	기타경비			
모 든 지 상 파 방 송 사 업 자	3.	당기광고운영비			
	가)	인건비			
	나)	광고대행수수료(주2)			
	다)	기타경비			
	4.	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 (주3)			
	①	특수관계자외주			
	②	기타외주			
	5.	외부구입방송프로그램 (주4)			
	①	국내구매			
	②	해외구매			

(주1) KBS만 작성: 가입자수 및 수신료 징수비는 KBS의 수신료 징수와 관련된 징수대상가입자수와 한전에 지급하는 위탁징수비 등 징수관련 직접 비용임

(주2) 광고대행수수료는 광고 수입과 관련하여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KOBACO, MEDIACRE8등)에 지급하는 징수 수수료 및 광고운영 관련 직접비용임

(주3) 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은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9조의 2(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에 따른다.

(주4) 국내구매: 국내의 사업자가 제작한 모든 방송프로그램을 구매하는 경우

해외구매: 외국의 사업자가 제작한 모든 방송프로그램을 외국에서 직접 또는 국내유통사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별지 제9-2호 서식)

## 유료방송사업자 영업통계

제X(당기) 20xx년 xx월 xx일 현재

기업명:

(단위:명/개/원)

과 목		아날로그	디지털
1.	가입자수(주1)		
가)	기초가입자		
나)	순증가입자		
①	신규가입자		
②	해지가입자		
다)	기말가입자		
2.	가입자당월평균매출액(ARPU)(주2)		
가)	기본채널수신료		
나)	유료채널수신료		
다)	단말장치대여(판매)수익		
라)	설치비		
마)	기타가입자수익		
3.	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주3)		
①	특수관계자외주		
②	기타외주		
4.	외부구입방송프로그램(주4)		
①	국내구매		
②	해외구매		
5.	기말채널운영현황(전체)		
가)	운영채널		
①	비디오		
②	오디오		
③	데이터		
나)	여유채널		
다)	기타채널		
라)	장애채널		

(주1) 가입자수는 아날로그와 디지털로 구분하여 단자수기준 유료방송가입자의 신규 및 해지에 따른 순증가입자와 연말시점 누적가입자수를 기재한다.

(주2) 가입자당월평균매출액(ARPU)는 아날로그와 디지털로 구분하여 상품구성항목별 월평균 가입자로부터 벌어들이는 매출액을 기재한다.

(주3) 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은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9조의 2(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에 따른다.

(주4) 국내구매 : 국내의 사업자가 제작한 모든 방송프로그램을 구매하는 경우

해외구매 : 외국의 사업자가 제작한 모든 방송프로그램을 외국에서 직접 또는 국내유통사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주5) 채널운영현황은 전체가용채널을 운영채널수와 여유채널수(예비), 기타채널(망감시), 장애채널수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별지 제9-3호 서식)

##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영업통계

제X(당)기 20xx년 xx월 xx일 현재

기업명:

(단위:개/원)

과 목		현 황
1.	채널공급유형(주1)	
가)	기본형	
나)	유료형	
다)	V O D 형	
라)	기타	
2.	방송프로그램제공매출액(주1)	
가)	기본형	
나)	유료형	
다)	V O D 형	
라)	기타	
3.	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주2)	
①	특수관계자외주	
②	기타외주	
4.	외부구입방송프로그램(주3)	
①	국내구매	
②	해외구매	
5.	기말방송프로그램송출현황(전체) (주4)	
가)	종합유선방송(SO)	
나)	위성방송	
다)	지상파디엠비	
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마)	특수관계자	

(주1) 아날로그 및 디지털 구분없이 회사가 송출하는 플랫폼(SO, 위성, 위성DMB, 지상파DMB, IPTV 등)의 채널 유형에 따른 결산일 현재 공급유형을 기록한다.

- 기본형이란 채널단위로 묶어파는 채널에 공급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말하며,
- 유료형이란 기본채널 단위 묶음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채널 추가에 따라 채널마다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채널에 공급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
- VOD형이란 VOD(PPV 등 포함)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급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

(주2) 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은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9조의 2(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에 따른다.

(주3) 국내구매: 국내의 사업자가 제작한 모든 방송프로그램을 구매하는 경우  
해외구매: 외국의 사업자가 제작한 모든 방송프로그램을 외국에서 직접 또는 국내유통사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주4) 송출현황은 플랫폼 매체별로 자사의 채널송출수를 구분하여 기재한다.  
하나의 프로그램을 복수의 플랫폼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중복하여 산출한다.  
가)~마)는 특수관계자가 제외된 채널송출수를 기재하고 특수관계자 송출 현황은 바)에 기재한다.

재산상황 경영자확인서

0000 주식회사 대표이사 000과 재산상황 담당자 000은 본 재산상황 보고서가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거짓 또는 왜곡없이 기재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재산상황 담당자: (서명 또는 인)

방송통신위원회 귀중